

「효창종합사회복지관」 위탁운영체(재위탁) 모집 공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, 「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「효창종합사회복지관」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
2023년 5월 1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위탁개요

가. 위탁대상 시설 현황(※ 결산서 및 조직현황은 복지관 홈페이지 참조)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주요 시설 현황
효창 종합사회 복지관	용산구 효창원로 146-12	연면적 : 3,841.87	4층(571㎡): 문화체육실, 방과 후 교실, 실용음악교실 3층(642㎡): 사무실, 회의실, 데이케어센터(별도 위탁) 2층(642㎡): 사무실, 아동발달지원센터, 평생교육실, 집단활동실, 관장실 1층(547㎡): 안내(매표), 헬스장, 주민자유활동실 지1층(989㎡): 수영장, 주차장, 강사휴게실 지2층(450㎡): 기관실, 중앙통제실

나. 위탁기간 : 2023. 9. 1. ~ 2028. 8. 31.(5년간)

다. 위탁사무 :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일체

- 시설관리 : 시설물 유지보수,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, 물품관리 등
- 조직관리 : 조직 및 인사관리, 운영위원회 관리 등
- 예산관리 : 예산·회계·결산관리, 구매·계약 관리 등
- 사업관리 : 복지관 고유사업 및 건강복지,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

라. 위탁예산 : 1,420,861천원 (2023년 예산편성액)

-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(예산)지원 기준 : 1,167,745천원
- 용산구 자체지원액 : 253,116천원(수영장 운영 및 중대재해 안전보건 사무 위탁비 등 지원)

※ 시·구비 지원액은 위탁범위(수영장 및 헬스장, 시설관리 등) 축소 및 시설여건(휴관 등)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마. 위탁조건

-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시설 종사자(시설장 제외)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
 - ※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(재정부담액 및 고용승계 의결 명시) 제출
- 협약 시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’, 및 ‘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의무(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제·해지 가능
- 국·시·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위탁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승계
- 기타 사회복지관 사업 및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, 위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
- **위탁운영 기간 중에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는 별도사업으로 분리 하여 향후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단에 위탁(대행)될 수 있음.**

2. 공고 및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23. 05. 01.(화) ~ 2023. 05. 30.(화) 【30일간】

나. 접수기간 : 2023. 05. 31.(수) ~ 06. 09.(금) 【7근무일】

다. 접수장소 :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

(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5층 ☎ 02-2199-7052)

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(09:00~18:00)내 방문접수 【우편접수 불가】

※ 대리인 방문 접수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의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

3. 신청 자격

가. 공고일 현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

※ 비영리법인은 「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

※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해야 함.

나. 최소충족기준(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)을 적용하여, 미달 시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심의 상정 제외

※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,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.

【 최소충족기준(심사대상 제외기준) 】

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

○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

-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(민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)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,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)을 받은 법인
-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
-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·수탁 해지된 법인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시 받은 공신력, 도덕상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성범죄 등)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

○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

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- 법인의 재정능력 등(기본재산·운영자금 등)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○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

- ‘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, 안전관리규정(지침)과 매뉴얼 제정 계획, 재해대응 체계 구축 계획,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’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

4.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제출서류

- 1) 위탁운영신청서, 서약서
- 2)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
- 3) 법인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
- 4) 법인정관
- 5)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
(재정부담액 및 고용승계 의결 명시)

※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

- 6) 법인 현황(임원현황, 연혁, 자산현황 등)
 - 7)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신분증, 명함 지참)
 - 8) 기타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
- ※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

나. 제출방법

- 1) 모든 제출 서류는 A4용지에 작성, 좌철 제본된 10부(원본 1부, 사본 9부) 제출
 - 사본(9부)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처리
 - 반드시 세부 목차 작성 및 목차별 라벨표시, 각 하단에 쪽 번호 기재
 - 2) 심사위원회 출석 발표 요약본 10부 및 PPT 발표자료(USB) 별도 제출
 -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 (USB에 저장)
 - PPT 발표 자료는 심사 3일 전까지 이메일 발송
(juns0302@yongsan.go.kr)
 - 3) 제출서류 “Ⅰ~Ⅴ” 순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말고, 서류 뒤에 별도의 증빙자료 쪽 번호를 부여 작성하고 목차별 라벨표시
 - 4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
- ※신청서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yongsan.go.k>)에서 다운받아 사용

5.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
가. 심사일시 및 장소: 2023년 6월 중(추후 개별통지)

나. 선정방법

-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·선정
- 신청법인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복지관 운영 계획(PPT 자료 활용)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, 불참 시 포기 처리함.
- PT 발표는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,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(법인 대표의 대리인이 참석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)
- 접수순으로 현장심사 (PT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)

- 제출서류 검토, 현장발표,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.

다. 심사기준 및 배점

대항목	평가항목	배점
공신력 (40점)	1.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	5
	2.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 구성·운영 수준	15
	3.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	10
	4.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	10
재정능력 (20점)	1.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, 신뢰성	4
	2.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	6
	3. 법인의 회계투명성	10
사업능력 (40점)	1. 지역자원 활용계획	10
	2.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	10
	3. 조직운영 계획	10
	4. 인사관리 계획	10
	5. 안전관리 계획	충족 /미충족
가산점(5점)	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	5

라. 최종선정

-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
- 수탁자 선정 1순위자(최고 득점자)라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탁자로 의결
-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
⇒ 재공모를 통해 수탁자 선정 추진
- ※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

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.

※ 1순위 대상자가 허위 서류 제출로 자격 상실되거나, 계약 포기 시 2, 3순위 순으로 수탁자 선정(단, 70점 미만인 경우 제외)

마. 결과발표 : 개별 통지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재

6. 유의사항

가. 모집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(5일 이상)를 실시하고, 재공고 후에도 동일한 경우 접수기관 대상으로 심사 실시함

※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선정,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3차 공고

나. 신청접수 현황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, 신청기관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(단 공고기관에서 실적증빙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음.)

라.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기관 확인 시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무효로 처리하고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됨

마.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바.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

사.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모집공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,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
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바람
(☎ 02-2199-7052)